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가칭 입주기업 모집공고

화성시 창업생태계의 중심·기반 역할을 수행할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가칭)”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저렴한 사용료의 업무공간 공급, 코워킹 및 회의공간 제공, 각종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보육 서비스 기능을 보유한 화성시 대표 창업 인프라에서 지역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미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 2.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공간개요

가. 공간명: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가칭)

나. 공간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LH 인큐베이팅센터 6~7층
다. 인큐베이팅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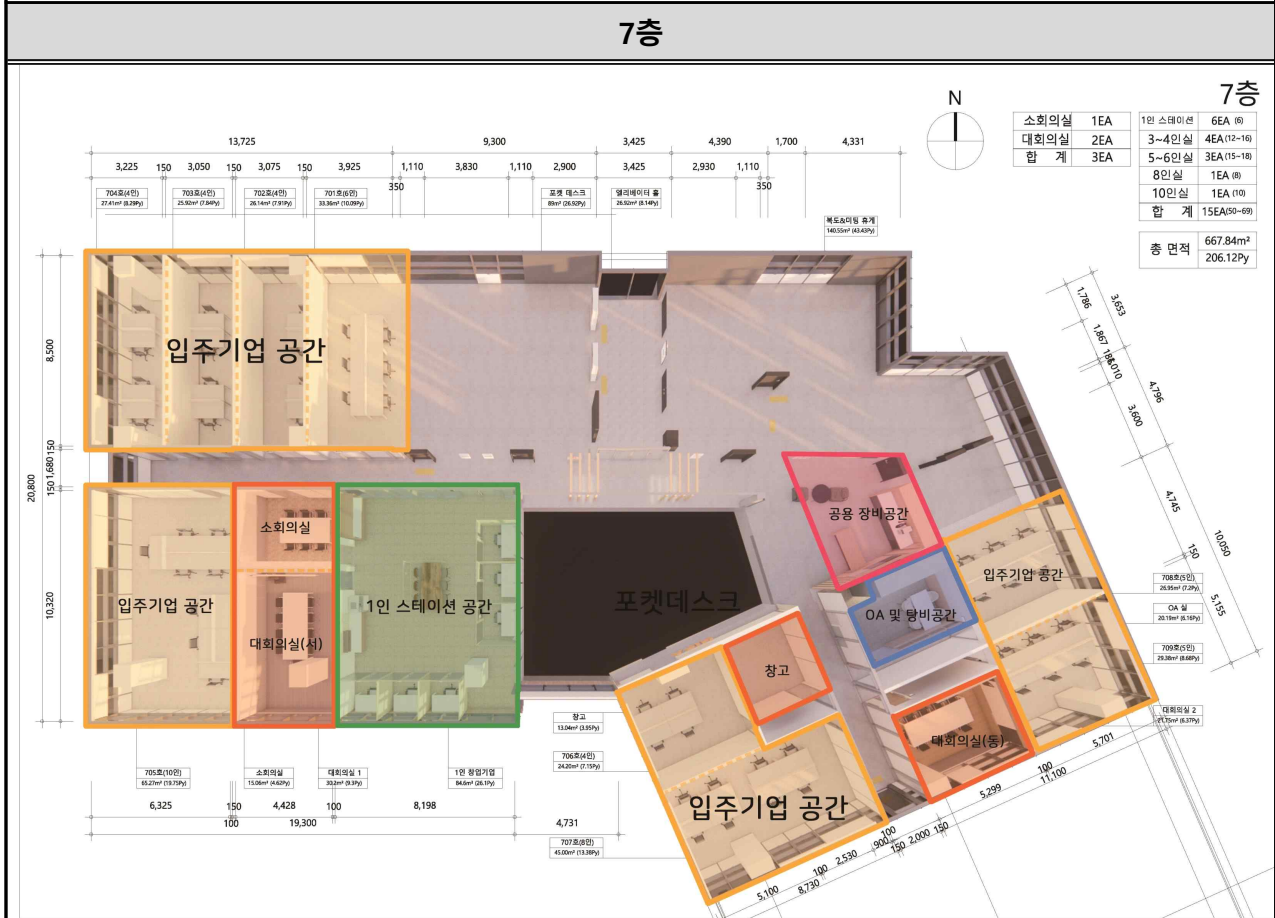
구 분	주요시설	조감도
지하 1~2층	지하주차장	
1층	코워킹스페이스, 공용공간, 창고, 근린생활시설, 운영사무실	
2층~7층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미팅룸, 다목적홀,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6-7층)	

라.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가칭) 안내

- (운영주체)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 (시설안내) 인큐베이팅센터 6~7층 內

구 분	주요시설	조감도
6층	601~609호(4~10인실), 대/소회의실, 커뮤니티홀, 창고 등	 
7층	701~709호, 대/소회의실, 710~715호(1인 스튜디오) 등	 

○ (층별도면) 인큐베이팅센터 6~7층



○ (협약기간) 2023. 05. 01. ~ 2023. 12. 31.

* 원래 1년 단위 협약이나, 23년도 최초 입주자는 구축공사 등으로 인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협약 예정, 최초년도 입주자는 연장 1년까지 더해 최대 1년 8개월 입주가 가능

** 협약시작일의 경우 모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개별로 협약 시작일을 조정할 수 없음.

○ (입주기간) 입주 연장평가를 거쳐 협약 만료시점부터 1년 연장 가능

○ (호실안내) 총 24실 보유

○ (월사용료) 좌석당 월 5만원, 별도의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 없음.

[공간 타입 및 사용료]

구분		호수(면적(m ²))	월사용료(원)	실수	잔여 호실
층	타입				
6층	4인실	602호(26.14), 603호(25.92), 604호(27.41), 606호(24.2)	200,000	4실	4실
	5인실	608호(26.95), 609호(29.38)	250,000	2실	2실
	6인실	601호(33.36)	300,000	1실	1실
	8인실	607호(45)	400,000	1실	1실
	10인실	605호(65.27)	500,000	1실	1실
7층	1인실	710~715호(3.35*6호)	50,000	6실	6실
	4인실	702호(26.14), 703호(25.92), 704호(27.41), 706호(24.2)	200,000	4실	4실
	5인실	708호(26.95), 709호(29.38)	250,000	2실	2실
	6인실	701호(33.36)	300,000	1실	1실
	8인실	707호(45)	400,000	1실	1실
	10인실	705호(65.27)	500,000	1실	1실
합계				24실	24실

관련 유의사항

1) 월 사용료는 **협약기간만큼 입주시 선납**

* 예) 4인실 기준, 1년치 선납금: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23년도 최초입주의 경우 협약 시작월로부터 월할 선납

2) 협약 만료 전 **중도 퇴실 시 선납한 사용료는 환급되지 않음.**

3) 사용료는 실제 입주인원과 관련 없이 실별 **좌석 수 기준으로 고정비용 부과**됨.

* 예) 4인실 기준, 5인 이용 또는 3인 이용 모두 월 20만원(4인 * 5만원) 부과

** 추가 인원에 대한 필요 사무집기는 자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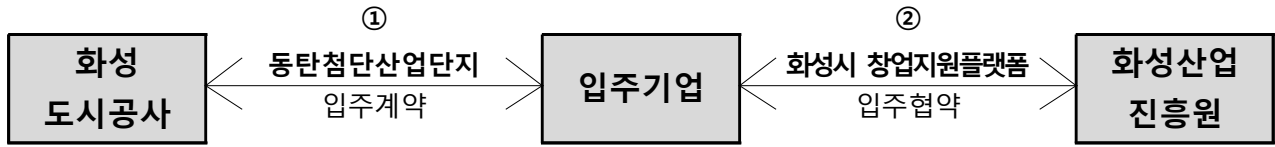
4) **평가 최고점 순으로 1지망 사무실 타입에 우선 배치**되며, 특정 타입이 먼저 만실되었을 경우 2지망, 3지망한 곳에 고득점순 재배정. 단, **부득이하게 지망한 타입에 모두 배정되지 못한 경우 진흥원에서 임의배정할 수 있음.**

* 배치된 타입에 입주를 원치 않을 경우 포기가능하며 차차순위 기업으로 순서 넘어감.

** 특정 호수를 지정하여 입주는 불가함.

*** 입주포기 의사 표시한 이후 반복 불가함.

마. 공간입주 계약절차



-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이 있는 LH인큐베이팅 센터가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입주대상업종이 정해져 있으며, 최종 입주선정기업은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화성도시공사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진흥원과 협약을 맺을 수 있음.
- 세부 입주업종은 아래 입주조건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시된 업종분류코드와 신청업종이 일치하여야 함.
- 입주기업의 경우 건물임대인인 LH와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치 않으며, 6~7층 운영주체인 화성산업진흥원과 입주공간 협약(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함.

◆ 모집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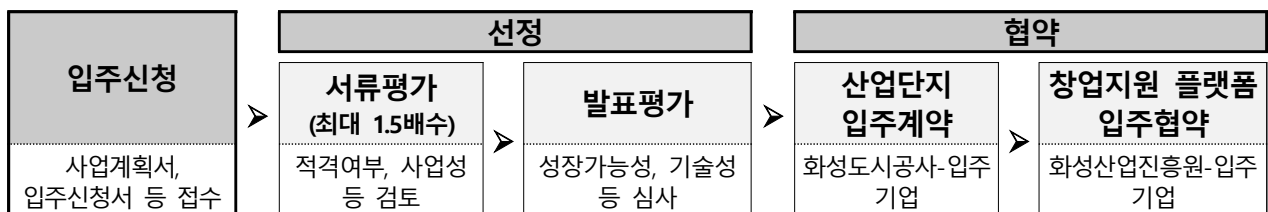
- 가. 모집대상: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가칭) 입주를 희망하는 스타트업(공고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나. 모집규모: 최대 24개사
- 다. 공고기간: 2023.02.27.(월) ~ 2023.03.24.(금) 17시까지
- 라. 접수기간: 2023.03.13.(월) ~ 2023.03.24.(금) 17시까지
- 마.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ipa.hscity.go.kr)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입주모집 공고’ 클릭 후 참여신청

*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

◆ 선정방법

가. 선정 및 협약절차



나. 평가방식

- (적격여부 판단) 입주조건 여부, 창업기업 여부 등 검토

* 단, 진흥원에서 적격판단 되었더라도 추후 화성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추가검토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공간입주 불가할 수 있음.

○ (1차 서류평가)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외부위원이 평가

○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운영

다. 평가항목: 입주자격 확인 및 기술성, 성장 가능성 등 평가

라. 선정기준: 최고·최저 제외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1차 서류평가) 고득점순 선발(70점 미만 과락), 최종선발 인원의 최대 1.5배수

○ (2차 발표평가) 고득점순 선발(70점 미만 과락), 최대 24개사 선발

○ 단, 정원 미달이어도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심사일정

○ (1차 서류평가) 접수 완료 후 1~2주 이내

○ (2차 발표평가) 홈페이지 내 서류심사 결과공고 시 별도 공지

바. 결과공고: 발표심사 후 2주 내 홈페이지 내 공지

사.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적색 '●' 표시, (선택제출 서류) 검은색 '●' 표시

업로드 단계 <3단계 신청정보 입력 중>	제출항목	비고
「제출서류 업로드」	● (서식 제1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PDF 형식으로 제출
	● (서식 제2호) 서약서, 동의서 등	
	●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창업기업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로 대체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로 대체 가능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대표 외 직원보유한 경우 제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법인기업인 경우 필수제출
	● 인증, 수상, 투자 등 실적증빙자료	Tips/유니콘/벤처기업 선정 등 우수실적 제출가능, zip파일로 압축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파인드 시스템 ⁷⁾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1부	예비창업자는 불필요, 개인 및 법인 기업만 제출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용으로 제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관련 유의사항

- 1) 신청서식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발급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제출
- 3) 사실증명서는 모든 정보내역 포함하여 발급하며, 기간설정 하지 않거나 모든 이력 보이도록 설정할 것(단,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개인정보는 블러처리 가능)
- 4) 신청기업 외 다른 개인사업자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복수 사업자인 경우 모두 제출)
- 5) 폐업이력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추가 제출
- 6) 개인사업자를 상속(또는 증여) 받아 설립한 경우 상속/증여 확인서류 추가제출
- 7) 파인드 시스템 미사용시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해당 서류도 수동 업로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 자동 업로드 기능, 프로그램 별도 설치필요

◆ 입주조건

가. 입주자격: **공통조건 모두 충족한 ① 스타트업 또는 ② 예비창업자**

구분	입주 필요조건
공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 중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스타트업 또는 스마트시티 산업분야로 창업 예정이어야 함. *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세부 대상은 아래 '나. 입주대상업종' 확인
	○ 본점 이전(기창업자) 또는 본점 신규창업(예비창업자) 예정이어야 함. * 연구소 및 공장 등록은 불가 ** 현 주소지는 입주자격과 무관
	○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 * 업력요건 해당여부 참조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단,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업력 7년 이내 판단함.
② 예비창업자	○ 본인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선정 시 협약 1개월 이내 반드시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완료 必 ○ 예비창업자는 신규창업인 경우만 인정하며, 창업 종류별(개인/법인) 신규창업 인정여부는 창업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판단
우대사항	○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우대 ○ 유니콘 인증, 벤처기업 인증, 틱스 선정 등 우대

나. 입주대상 업종

구분	대상산업	세부분야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26)	반도체설계(팹리스), 반도체 소자, 디스플레이, 인쇄회로 기판,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장비, 영상/음향기기 등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스마트센서(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대상), 헬스케어, 측정기기, 광학기기, 의료용 기기, 치과용기기 등
	전기장비 제조업(28)	전기자동차용/에너지저장용 이차전지, 친환경조명(LED), 중전기, 가정용 전기기기 등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화 공작기계, 로봇, 산업용 기계, 기계 요소 부품 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엔진 및 파워트레인 설계, 특장차, 자동차 부품(동력, 차체, 전기장치) 등
서비스업	출판업(58)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온라인, 모바일 포함),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등
	통신업(61)	사물인터넷, 유무선 통신, 위성통신, 통신재판매, 주파수 공용통신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인공지능, 각종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정보화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정보서비스업(63)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등
	연구개발업(70)	공학, 자연과학, 의학학, 농생명공학, 인문사회 등 연구개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정설계, 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시험/분석 등

* 업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상에 명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기준을 적용함.

다. 입주불가 업종: 동탄도시첨단산단기본계획상 도시형 공장 불허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도시형 공장 불허업종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 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라. 그 밖의 제외대상

○ 업종 이외 사유로 부적격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부적격 사유

- 1)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초과인 경우
- 2)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5)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6)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7)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거: [참조1] 창업기업 인정기준

8)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 및 물품은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여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참여 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조사를 위한 관리시스템 (질링스) 가입 필수 - 사업 선정 시 성과관리 시스템 가입링크 안내 예정, 미가입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창업·산업육성팀

- ☎ 031-278-4733, ✉ pla4331@hsbiz.or.kr
- ☎ 031-278-4233, ✉ kjy@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참조 1 / 창업기업 인정 기준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결과 ①업력기준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②폐업 또는 기타 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창업기업 인정 기준표>					
신청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업력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					
개인 기업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아	동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아님	-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이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다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신규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아님	가장 빠른 개인사업자 창업일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이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한 뒤	동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동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 또는 폐업한 뒤	신규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개인사업자 개시일		
법인 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한 뒤	이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이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양수이전 동일대표의 개인사업자 개시일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이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이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		
조직변경을 할 때	동종을 유지한 경우	창업아님	-		
	이종으로 변경한 경우	창 업	변경일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한 뒤	신규로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신규 법인사업자 개시일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 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